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성인지예산제도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·집행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

◆ 대상회계 :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

◆ 대상사업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,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○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	여성발전기본법(§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
	○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최근 3년간 ('09~'11) 시행한 사업
	○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	매년 7.31까지 「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 포함 통보
권장	○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단체장 공약사업 등

◆ 제외대상 :

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평등목표(성과목표)를 정하기 곤란

◆ 성인지 예산서 성격

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,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(예산서 부속서류)